

01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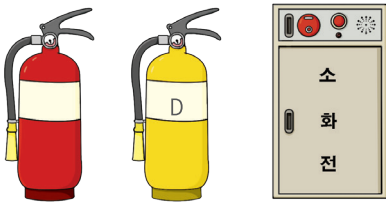
02
화학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절차
마련·준수



03
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04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소화기 구비



05
비상구 확보,
비상대피훈련 실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06
흡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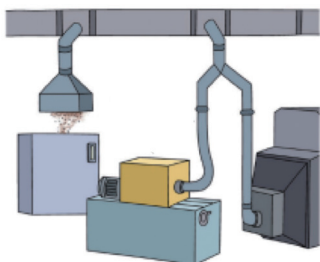


07
위험한 화학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



10대 수칙

08
충분한 작업장 환기



09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10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보호구 착용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 점검표

○:적정, △:보완필요, ×:부적정

| 구분 | 점검항목 | 결과 |
|------------------------------|---|----|
| 취급 전 안내사항 | | |
| 1 | [유해·위험성 확인]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유해·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나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이 담겨 있습니다. | |
| 2 |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나요? » 유해·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십시오. | |
| 3 | [안전보건 교육]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안전한 작업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나요? »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사고예방, 위험상황의 인식 및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
| 작업 시 조치사항 및 화재 등 비상대응 | | |
| 4 | [소화설비] 적절한 소화설비 및 소화기를 갖춰 두었나요? »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 |
| 5 | [비상구 확보 및 대피 훈련] 비상 시 이용할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고, 대피훈련을 하나요? »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
| 6 | [화재·폭발 방지조치] 화기나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나요? » 흡연, 불꽃, 열원, 정전기 등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서는 물과의 접촉, 마찰, 충격에 의해서도 화재·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
| 7 | [안전한 보관 및 저장] 화학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에는 필요한 양만 두고 있나요? »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8 | [작업장 환기]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환기하고 있나요? » 작업장 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춰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9 |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나요? »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부 화학물질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
| 10 | [보호구 착용]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나요? » 화학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 등)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